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김병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설 영농법인경영연구소)

A Study on the Legal Persons in Joint Farming
-into the Rice Farming Legal Persons in Korea-

Byeong-Tae Kim

Institute for Management of Agricultural Legal Persons, Korea Advanced Farmers Association, Attached

적  요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은 40년 묵은 과제이다. 1990년 4월에야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92년을 한국농업구조개선의 원년이라고 정부는 선언하였다. '93년에 42조원의 예산책정(98년 종료)과 95년에는 여기에 더하여 농어촌 발전특별세 15조를 합쳐 2004년까지 총 57조원의 거금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농업구조개선의 주역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임을 확인하고 여기에 정책의 중심이 기울여져 96년말까지는 4,900여개의 법인이 조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4,900여개의 법인은 그 성과가 당초의 기대나 예상과는 크게 빗나갔다. 더욱이 한국 농업구조개선의 주요대상이 벼농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은 1995년 12월말 현재 2,500여개 영농조합법인중 100개 미만이고, 그 가운데서도 절반정도가 등록된 사업종목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것 마저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농발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따른 부분 또는 전면협업을 실행하고 있는 법인은 20여 개이고 그 협업의 수준 또한 지극히 낮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경영형태의 모델로서의 구실은 하고 있는 듯 하다. 구조개선작업이 이같이 답보하는 근본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농업구조개선의 초점이 벼농사 구조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제부터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을 이곳에 유도하고 이미 설립한 법인들은 구조개선사업을 원점에 되돌려 벼농사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사업은 몇몇 엘리트의 농업구조개선에서 그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엘리트가 핵심이 되어 마을 주민 모두가 여기에 결속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국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I. 서  론

한국농업을 둘러싼内外의 환경조건의 격변에 대응하여 체

질이 강한 농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정책의 추진이 한국농정에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이 그 법적 기초로 되었고, 농업구조개선의 주역인 영농조합법인은 동법 제6조에 근거한 농업생산조

직이다.

제6조①항에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소농경제의 퇴두리를 벗어나서 기계화·대경영으로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높혀 농업경영의 체질을 강화하자는데 있다.

정부는 1992년을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원년이라고 선포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지 2년이 못 가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벌써 곳곳에서 벽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에 농발법은 16차례나 개정되고 주무부처의 담당관도 수없이 바뀌면서 한국농업구조개선에 거국적으로 대처하였건만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겉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 추진된 영농조합법인의 영농유형별 설립현황(농림수산부,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1996. 5)을 보면 1995년 12월말 현재 총 2,454개소 중에 쌀 96¹⁾, 채소 267, 과수 332, 화훼 91, 특작 222, 축산 611, 가공 124, 유통 69, 복합 642개소로 되어 있다.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96개소는 법인설립 당시의 법인설립신고서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집계된 것으로 실제는 쌀과 관련이 없는 작목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 또 현재 운영중단, 해산한 법인도 있으며, 법에서 제시한 협업적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다른 부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하여 법에 합당한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은 지극히 드물다. 또 있다고 해도 이들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의 핵심과제가 벼농사의 구조개선에 있다고 할 때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벼농사의 구조개선이 한국농업구조개선의 핵심과제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민의 주식물인 쌀의 안정적 확보, 둘째로 농가소득에서의 벼농사의 비중, 셋째, 쌀 밖에는 다른 것을 재배하기 어려운 논이 차지하는 전체 농경지 면적에서의 비중, 넷째, 나라의 환경보전,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쌀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민족적 과제라는 점들에 있다. 우리에게 있어 이같이 중요한 벼농사가 영세하고 분산된 농지의 소유·이용 방식 때문에 기계화의 성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기계 때문에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벼농사의 구조개선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7월 8일자로 발표한 농림부의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제 농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이대로 진행되어서도 안되게 되었다. 쌀의 조기개방을 재촉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국민의 생명줄인 벼농사를 기어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벼농사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믿고 본 연구는 그 육성방안과 법인구성원의 활동지침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입법정신, 특히 동법 제6조는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징이 영세한 가족노작경영에 있다고 보고 이 구조를 개선하여 기계화 대경영화 하기위해서 가족단위의 소경영을 끊어 협업적 경영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막대한 지원자금이 방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약하여 정책당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농업의 구조개선을 하겠다고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들은 구조개선과는 상관없는, 있어도 거리가 아주 먼, 어찌면 오히려 구조개선을 가로막는 구실까지도 서슴치 않는 법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힘을 기울여왔다.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이 충정을 헤아려 연구비를 지원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 조그마한 연구보고서가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진다면 필자로서는 더 없는 기쁨이겠다.

II. 영농조합법인의 현황

'96년 7월 8일 농림부에서는 법인경영체 운영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95년 12월말 현재 설립등기된 3,634개소 중 조사불능법인 71개소를 제외한 3,563개소(농업회사법인 1,148(등기된 회사법인 1,179), 영농조합법인 2,405(등기된 조합법인 2,454)를 대상으로 '96. 5. 1~5. 10(10일간) 시·군농촌지도소의 현지방문 면접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①설립현황 및 출자현황, ②정부지원금액 및

1) 상기 자료에는 총 2,455, 쌀 97로 되어있으나 검토한 결과 총 2,454, 쌀 96임 표4 참조

표 1. 설립동향

(단위:개소)

	계	'90	'91	'92	'93	'94	'95
영농조합법인	2,454	1	28	57	229	1,048	1,091
농업회사법인	1,179	-	45	147	289	307	391
계	3,633	1	73	204	518	1,355	1,482

출처 : 농림부,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 1996. 7. 8. p5.

주 ; 표4에 따라 필자가 수정한 수치임

표 2. 운영실태

	정상운행	육성중	운영중단	실적없음	계
영농조합법인	1,177(48.9)	644(26.8)	134(5.6)	450(18.7)	2,405(100)

출처 : 앞의 자료

'95년도 경영실적, ③경영성과, 발전성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경영평가로 되어있다.

짧은 기간동안에 조사자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구조개선에 서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결여한 채, 더구나 경영분석이나 경영진단의 전문성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이니 만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경영체의 운영실태 전수조사는 이것이 처음이고 그나마의 자료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고 개괄적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한도내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그 동안의 법인경영체 설립동향을 보면 표1과 같거니와 영농조합법인 총 2454개소 가운데 1994~95년, 2년간에 2140개소로 전체의 78%가 설립되었다.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하는데 거쳐야 할 교육·훈련·구성원의 결속·주민들과의 관계정립 등 선행작업을 생각하면 이 같은 급격한 증가가 비 정상적이며 거쳐야 할 선행작업은 어느 한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농업구조개선사업이 혼미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다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문 21.0%, 채소 19.8%, 과수 12.9%로 벼농사 이외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구조개선의 핵심적 대상이어야 할 벼농사 부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구나 법인체의 수가 그같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법인체를 조직하면 정부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기가

용이하고, 중·소농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뿐이라고 못박고 개별전업농에게는 5천만원까지 지원되나 영농조합법인은 38억원까지 지원된다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같이 급증된 영농법인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리가 없는 것인즉 전국의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는 표2와 같다.

표2는 영농조합법인 2405개소의 운영실태를 밝혀놓은 것인데 육성중인 법인 644개소(26.8%)는 사업미착수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중에 있고, 실적이 없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법인이 584개소(24.3%)에 이르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177개소인 48.9%이나 이 때 「정상」의 기준이 문제로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총자본에 대한 이익 즉 이익율 산출의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3의 「'95년도 경영수지 분포」를 보면 역시 「정상」의 개념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어있다.

즉 표3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2405개소 가운데 경영수지가 0인 조합법인과 적자조합의 합계가 1,466개소(61.0%)이고, 나머지 39%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 표2에서의 정상운영 법인 48.9% 속에는 경영수지가 0이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9.9%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39%의 「'95년도 경영수지 평균」이 수입 10,999만원에 대하여 지출 10,041만원으로 수익은 958만원(출처 : 전계자료)이고 보면 흑자법인의 내용도 알만하다.

표 3. '95년도 경영수지 분포

구 분	적자	0	1천만원 미만	1~ 2천만원	2~ 5천만원	5천~ 1억원	1억원 이상	계
합 계	453 (12.8)	1,278 (36.0)	730 (20.6)	345 (9.7)	432 (12.2)	155 (4.4)	160 (4.5)	3,553 (100)
농업회사법인	153 (13.3)	112 (9.8)	357 (31.1)	215 (18.7)	240 (20.9)	45 (3.9)	26 (2.3)	1,148 (100)
영농조합법인	300 (12.5)	1,166 (48.5)	373 (15.5)	130 (5.4)	192 (8.0)	110 (4.6)	124 (5.6)	2,405 (100)

주 ; 경영수지가 0인 법인은 사업 미착수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는 하였으나 아직 정상운영이 되지 않는 법인과 사업실적 없는 법인임
출처 : 앞의 자료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액 평균은 14,465만원(현금출자 6,883만원, 현물출자 7,582만원)으로 1인당 출자금액은 544만원으로 되어있고 고정사자 투자가 3억원(그중 시설 2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수가 평균 26.6인이니(전체자료) 수익금 958만원을 26.6인으로 나누면 1인당 수익은 36만원으로 되는 셈인데 이는 1인당 출자액 544만원에 대한 은행 예금 이자도 안되고 고정투자 3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2,700만원(세금 제외 이자율 연 9%)을 생각하면 이것을 수익이라고 생각할 것이 못된다. 이리하여 벌써 법인 해산을 희망하는 업체도 107개(전체자료)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농림당국에서는 이상의 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다.

②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간편하여 위장 설립이 가능하다.

③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이 미비하다.

④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⑤경영체 운영경험이 없어 세무, 회계, 마아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⑥일선 시·군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⑦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등이 적시되어 있어 적시된 문제점들에서 현실인식을 위한 진솔한 자세는 엿볼 수 있으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괴상적이고 강구하려고 하는

대책도 현상에 대한 대중요법에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의 실태를 가져오게 한 본질적인 원인규명이 없고 따라서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들에 대한 농협의 시각은 색다르다.

즉 영농조합법인들이 법 제6조에 입각한 농업생산의 협업적 경영보다는 유통에 치중되어 농협과의 경합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의 시책이 농협을 약화시키는데로 치닫고 있다고 불평이 많다. 여기에 대하여 법인 측은 농협이 오죽했으면 영농조합법인이 유통에 치중하게 되었겠는가고 반문하면서도 농업생산의 협업적 경영에는 언급을 피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보다많은 편의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이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답으로 될 수는 없다.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선의의 경쟁에 의해 승패를 가린다면 두법인이 함께 망하고, 그 과정에 조합원에게 일시적인 편의은 돌아갈지 모르나, 길게보아 끝내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농협측은 정부측의 입장이 무책임하다고 크게 반발한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인가. 농협은 법상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지도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또 농협법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농밀법에는 정조합원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94. 12. 22 같은 날짜에 공포) 그렇다면 농협은 준조합원 또는 정조합원인 영농조합법인을 자신의 조합원으로 끌어안고 협업경영에 대한 경영지도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즉 법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더 큰 조합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양이면 지역조합 내부에 가칭 「법인부」를 신설하여 그 법인 사업을 도와야 하는 것이 정이치일 것이다.

'96년 6월 27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농업법인 국제심포지움에서의 일본 사끼이 토미오(酒井富夫) 교수의 발표가 운데서 일본에서도 농협과 농업법인사이에 충돌이 야기되고 있으나 잘되고 있는 농협에서는 이 충돌이 없고 잘못된 농협 일 수록 충돌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농사조합법인」을 끌어안지 못하는 농협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협은 영농조합법인과 정부를 향하여 유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법인경영체가 농업생산의 협업적 경영에 치중할 수 있도록 생활·생산·경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인 경영체가 농업구조개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뒤바라지하고 개별법인 활동의 범역을 넘는 업무를 농협이 취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어찌든 오늘날의 영농조합법인이 법 제6조에 규정된 농업생산의 협업적 경영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고 보면 현재의 영농조합법인들은 많은 수가 생산조직이라기 보다는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이용, 공동구판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공시설만 하더라도 5~6명이 구성원이 되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지역내 개별 농민들로부터 원료생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하고 있거나 지역내 개별 농민을 출자자로 조합원으로 맞아들였다 할지라도 농업생산은 여전히 개별경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6조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협업적 농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영농조합법인이다. 즉 소경영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계화 대경영의 유리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계획입안자나 정책집행기관이나 지방행정 담당자나, 지도소, 농협은 물론 법인 구성원인 농어민까지 모두 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이대로 간다면 농업구조개선 작업은 물건너 갈 것이고 지금까지의 재정투융자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전국의 영농법인은 원리금의 변제불능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이것이 농협에는 불량채권으로 남아 농협경영안정에도 위협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III.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현황

농림부에서 밝힌 영농유형별 설립현황에서 보는 총 2,454 개소의 법인 가운데 0.04%에 불과한 96개의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실태를 먼저 농림부의 전자자료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1996. 5)에 입각하여 알아본다.

전자자료에 의하면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이 96개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연도별 설립현황은 표4와 같다.

위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가 조사표를 발송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집계를 단념하고 차선의 방법으로 탐문 및 탐방의 방법으로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탐문은 주로 전화탐문에 의존하였고 탐문결과 이해할 수 없었거나 특별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된 법인은 탐방하여 면담조사로써 보충하였다.

조사결과는 표5와 같거니와 조합원 수와 출자금 내역은 '95년 12월말 현재의 농림부 『현황』(1996. 5)에 따르면서 그 후의 변동유무를 살폈고 주로 경영형태와 사업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표6은 표 5의 조사결과를 분류하여 집계한 것이다.

표6은 전국의 96개 벼농사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주소변경, 전화변경·결번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 15개소,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한 4개소, 운영중단 7개, 법인체해산 1개소, 벼농사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9개소 합계 36개소를 제외한 60개소의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본 것이다. 빙도가 제일많은 사업이 농작업대행 30개소,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27개소, 공동출하·가공 17개소, 집단재배·공동작업 5개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면협업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법인은 4개가 있는데 이들은 조합원의 개별경영을 한데 모우는 한편 임차 또는 수탁자를 얻어 법인경영을 전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협업경영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17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소유농지는 그대로 개별경영하면서 임차지를 법인명의로 얻어 임차지에서만 협업경영을 하여 제비용을 떨고 나머지를 작업참여도에 따라 배당 받는 법인이 5개가 있고, 자작지와 임차지에서의 부분협업경영법인 12개소는 대부분의 농지를 종전대로 개별경영 상태 그대로 두고 아주 적은 일부의 농지를 법인에 출자 또는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또는 채소 등 다른 작목

표 4. 벼농사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시·도 \ 연도	계	'90	'91	'92	'93	'94	'95
계	96(97)		8	7	9	50	23
서울							
부산	3						
대구							
인천							
광주							
경기	14			1	3	8	2
강원	15(16)				1	12(13)	2
충북	10		1	1	1	2	5
충남	15		5	4	1	4	1
전북	11			1		9	1
전남	12				1	7	4
경북	5		1		1	1	2
경남	11				1	4	6
제주							

자료 : 농림부,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1996. 5 p4.

주 : ()내의 수자는 위 자료의 숫자이나 필자가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이 정정함이 타당함.

표 5. 벼농사 영농조합법인 현황

N:조사번호, M:조합원 수, 협업경영A) : 자작지와 임차지, B) : 임차지

N	M	출자금 및 내역(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1	35	479(농지379, 현금 100)	전면협업 ^{A)} ; 종교단체의 사업활동 일부
2	10	50(현금 20, 현물 30)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3	6	245(농지 233, 현금 12)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개별자작지 8만평, 수탁지 1.5만평, 작업대행 법인기계 확보, 공동이용
4	5	634(농지 232, 현금70, 현물 332)	농작업 대행 ; 이름만 법인 1인이 운영 조합원 작업참여시 노임지급
5	5	513(농지 205, 현금 50, 현물 258)	법인운영중단 ; 해체결정
6	5	138(농지 30, 현금 69, 현물 39)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7	6	100(현금 100)	법인운영중단 ; 사업미착수(휴면중)
8	5	1(현금 1)	조사불능 ; 통화중지로 소재불명
9	40	40(현금 40)	부분협업경영 ^{B)} · 공동출하 ; 쌀공동판매, 밭 3,000평 임차, 콩재배협업경영
10	5	50(농지 50)	부분협업경영 ^{A)} · 농작업 대행 ; 벼섯재배협업. 개별경영 자작지 및 수탁지 8만평, 농기계 공동소유 · 공동이용, 작업대행
11	8	100(현금 100)	벼농사 무관사업 ; 조합원 중 5명 벼농사 개별영농 1명 조경사업(대표자) 조경사업을 법인명의로 추진. 조합원은 조경사업에 참가 노임소득
12	5	200(현금 50, 현물 50)	조사불능 ; 전화결번으로 소재불명
13	5	125(현금 125)	벼농사 무관사업 ; 밭농사 작업대행(거름깔기, 파종, 수확) (당근), 유기질비료공장(3억) 550평, 수해로 유실, 저온저장고 운영

N	M	출자금 및 내역(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14	6	50(농지 30, 현금 20)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15	5	16(기타현물 16)	농작업 대행 ; 자작지 · 수탁지 15만평, 기계개인소유, 이용은 공동
16	6	50(기타현물 50)	부분협업경영 ^{A)} · 농작업대행 ; 농기계 이용공동, 비닐하우스 4,000평 법인경영
17	5	125(현금 100, 현물 25)	부분협업경영 ^{B)} · 농작업대행 · 공동출하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임차지 5만평 법인경영, 수탁지 15만평, 개별자작지 2만평 작업대행, 쌀판매사업, 농기구수리사업, 창고60평 2동, 건조실, 창고 사무실 30평
18	5	3(농지 3)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19	5	15(농지 15)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기계공동소유, 공동이용, 조합원 자작지 6만평작업대행, 효소발효퇴비제조판매
20	5	3(현금 3)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기계공동이용, 개별경영 자작지 작업대행
21	5	3(현금 3)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개인소유 기계공동이용으로 작업대행, 퇴비분사기, 액비탱크는 공동소유로 작업대행
22	9	229(농지 229)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시설설치운영 · 공동출하 · 가공 ; 농지출자분 1.5~2만평 협업경영, 나머지 놓지는 개별경영, 기계공동소유 공동이용, 건조장 공동소유 공동이용, 공동출하
23	8	4(현금 4)	부분협업경영 ^{A)} ·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벼농사 1.5만평 부분협업경영, 기계 공동관리 · 공동이용 작업대행, 건조장 공동경영, 나머지 놓지는 개별경영
	24	5 8(현금 8)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수탁지 8만평 및 개별경영 자작지 대표개인 책임으로 운영, 건조기 9대 열풍건조, 트랙터 2대, 콤바인 4조 2대 법인소유
25	5	206(농지 206)	부분협업경영 ^{B)} · 벼농사무관사업 ; 벼농사 개별경영, 기계개별소유, 비닐하우스700평 협업경영 과채류재배
26	5	1(현금 1)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시설설치운영, 법인소유기계 · 개인기계 공동이용, 법인구입농지 9,000평, 임차지50,000평 협업경영, 개인소유농지개별경영
27	6	2(현금 2)	조사불능 ; 전화결번 소재불명
28	5	62(현금 2, 현물 60)	기타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트랙터 5, 이앙기 5, 건조기시설로 작업대행 회사경영
29	6	3(현금 3)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30	7	4(현금 4)	부분협업경영 ^{A)} ; 트랙터 개인소유, 이용공동, 논 2,000평, 밭 10,000평, 협업경영, 잔여농지개별경영
31	5	3(현금 3)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32	10	30(현금 30)	부분협업경영 ^{B)} · 공동작업 · 공동시설설치운영, 농기계 개인소유 이용공동, 벼농사 개별경영, 퇴비살포기 법인소유공동이용, 임차지 3,000평 찰옥수수 협업경영, 묘판상토 공동작업
33	9	115(농지 115)	조사불능 ; 전화결번, 소재불명
34	8	50(기타현물 50)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35	11	60(현금 60)	벼농사무관사업 ; 비닐하우스 11,000평, 조합원 개별경영, 벼농사 개별경영, 오이공동판매, 농업기자재 공동구
36	7	100(농지 100)	벼농사무관사업 · 공동시설설치운영, 포도재배 7명, 20,000평 개별영농, 공동출하, 간이집하장 50평(법인관리), 벼 개별경영
37	5	433(농지 377, 현물 56)	농작업 대행 ; 농기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각 1대, 대표개인 소유, 조합원 출역노임지급, 작업대행
38	5	214(농지 214, 5000평)	공동작업 ; 농지 5,000평, 서류상에 출자만 하고 경영은 종전대로 개별경영,

N	M	출자금 및 내역(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개별영농 2,000평, 개인소유기계로 품앗이식으로 공동작업
39	5	50(농지 15, 현금 35)	부분협업경영 ^{B)} · 공동출하 ; 임차지 10ha협업경영, 자작지 개별경영, 기계1명 전담 노임지불, 생산물(쌀, 수수, 기장, 흑미, 향미) 공동판매
40	5	150(현금 150)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41	4	24(현금 24)	기타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42	7	5(현금 5)	기타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기계공동이용, 벼농사는 개별경영, 영농대행
43	7	81(현금 81)	공동출하 ; 무농약 개별경영, 생산물 공동판매, 유기농(우리밀 · 쌀)재배지도, 출자금은 수매자금으로 이용, 수매물 생협 납품
44	11	58(농지 14, 현금 5, 현물 39)	법인운영중단 ; 해산준비중
45	12	14(농지 8, 현금 2, 현물 4)	공동출하 · 가공 ; 가공업, 정미소 운영, 조합원 생산물 및 기타 지역벼 수집
46	7	56(농지4, 현금0.9, 현물 51)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 농기계 공동소유, 작업대행, 수탁지 및 개별경영자작지
47	11	156(농지 30, 현금 15, 현물 11)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수탁지 200,000평 조합원 개별경영지 30,000평, 기계 공동이용
48	10	154(농지 1), (현물 153)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 법인이 작업대행 신청받아 조합원에 작업안배, 법인소유기계 폐기, 개인이 기계구입 개신, 조합원 소유지 개별경영, 기계격납고 1,000만원 법인보조 응자 무
49	11	55(기타현물 55)	농작업대행 · 집단재배공동작업 ; 조합원 개별경영 자작지 4만평, 법인 수탁지 7만평, 기계공동이용 작업대행
50	6	43(기타현물 43)	농작업대행 ; 출자기계 공동이용으로 법인수탁지 작업대행 10만평, 조합원 개별경영농지 1.5만평, 농작업 대행, 비닐하우스 설치, 무재배, 개별경영
51	6	99(농지4, 현물 95)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농기계 공동이용(출자) 작업대행, 96년 40,000평
52	7	99(농지 4, 현물 95)	해산 ; 1994년에 해산
53	8	75(농지 72, 현금 3)	공동출하 ; 개별경영, 공동출하
54	8	353(농지 228, 현금 4, 현물 121)	부분협업경영 ^{A)} ·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법인설립이전부터 협업경영 실시, 법인소유 14,000평 부분협업경영, 수탁지 12,000평과 조합원 자작지 개별경영 3만평 작업대행, 보조 · 응자무 출자기계 공동이용
55	6	67(농지 67)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56	10	92(농지 69, 현금 1, 현물 22)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시설설치운영 ; 출자농지 10,000평 협업경영, 잔여개별소유농지, 개별경영, 출자기계 공동이용
57	9	89(농지 83, 현금 6)	전면협업경영 ^{B)} ; 28ha협업경영, 구성원 자작지 개별경영
58	5	12(현금 12)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59	5	78(현금 5, 현물 73)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 기계공동이용, 작업대행
60	15	1056(농지 1056)	벼농사무관사업 ; 식품가공 · 유통 · 가족이 주축이 된 회사형태
61	5	45(현금 3, 현물 42)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 농기계 공동이용, 농작업대행 20만평
62	5	51(현금 11, 현물 40)	운영중단 ; 사업미착수 휴면상태
63	5	71(현금 5, 현물 66)	조사불능 ; 전화결번 통고, 소재불명
64	5	98(현금 6, 현물 92)	조사불능 ; 전화변경, 불통, 소재불명
65	51	132(농지 18, 현금 114)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출하 · 농작업대행 · 가공 ; 법인소유 논 2,500평,

N	M	출자금 및 내역(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잡종지 1,000평, 시설채소 퇴비공장 협업경영, 도정 · 양곡유통, 작업대행 12,600평
66	6	308(농지 163, 현금 100, 기타현물 45)	공동출하 ; 양곡유통, 도정공장 운영
67	5	75(현금 5, 현물 70)	조사불능 ; 전화불통, 소재불명
68	5	75(현금 5, 현물 70)	운영중단 ; 해체준비
69	174	174(현금 174)	벼농사무관사업 ; 텁밥퇴비공장 1인 운영 조합원은 100만원 출자, 경영참여 무, 일 있을 때 작업참여 뿐
70	12	211(농지 67, 현금 107), 현물 37)	공동출하 · 공동이용시설설치운영 ; 농지개별경영, 기계공동이용, 쌀공동판매
71	11	70(현금 70)	공동출하 · 공동시설설치운영;특수미 재배, 개별경영 기계공동이용, 쌀 공동판매
72	5	100(농지 100)	공동시설설치운영 ; 기계 2인이 관리, 공동이용, 개별경영
73	9	135(농지 135)	운영중단 ; 사업미착수, 휴면상태
74	6	100(농지 100)	공동작업 · 공동시설설치운영 ; 농작업대행, 기계공동이용, 공동작업
75	50	125(농지 108, 현금20)	공동출하 ; 개별경영, 공동판매, 기계일부공동이용
76	9	643(농지 297, 현금 233, 현물 113)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출하 ; 밭 5,000평 과재배협업경영, 논은 출자만 하고 개별경영, 기계 출자만하고 사용은 종전대로 개인, 희미위주, 잡곡, 쌀 공동판매
77	9	83(현금 20, 현물 63)	운영중단;벼농사 개별경영, 법인으로서의 사업없고, 97년부터 꽈 2만평 공동경영계획
78	5	124(농지 63, 현금 61)	부분협업경영 ^{A)} ; 벼 1.5ha, 대파, 무 3,000평, 협업경영, 잔여농지 개별경영
79	7	104(농지 63, 현금 17, 현물 24)	전면협업경영 ^{A)} ; 벼농사 10,000평, 기계 못들어가는 잔여지 개별경영, 농기계개별소유공동이용, 농진공간척지임차협업경영교섭계획
80	6	50(현금 50)	벼농사무관사업 ; 벼농사 개별경영, 법인경영 유자 3,000평
81	6	88(농지 4, 현금 5, 현물 79)	농작업 대행 ; 농기계 개인소유, 개인운영으로 작업대행
82	5	10(현금 3, 현물 7)	조사불능 ; 전화변경 불통
83	7	58(기타현물 58)	전면협업경영 ^{A)} ; 조합원 과수농사전문(3,000~4,000평) 벼농사협업경영 30ha(임차지 및 조합원 농지), 트랙터 2, 콤바인 대형 1, 기타기계 일습
84	5	60(현금 60)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농기계 공동이용, 작업대행 20ha
85	15	3(현금 3)	공동출하 · 가공 ; 개별생산, 공동판매, 양계로 계분발효 조합원에 공급
86	8	50(현금 50)	농작업대행 ; 논 2만평 작업대행, 과수원 개별경영, 벼농사 개별경영
87	5	50(현금 50)	농기계 대여 ; 기계대여, 하우스 준비중, 대표교통사고로 사업중단
88	6	70(현금 70)	벼농사무관사업 · 공동출하 ; 비닐하우스 900평, 개별경영 팔기 · 무 · 감자재배 공동판매
89	5	60(현금 60)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기계공동구입 공동이용, 벼농사 작업대행 10만평, 창고건립
90	5	50(현금 50)	기타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기계공동소유, 공동이용
91	5	60(현금 60)	농작업대행 · 공동시설설치운영 ; 조합원 농지 20,000평, 기계공동이용 작업대행
92	5	5(현금 5)	조사불능 ; 전화결번, 소재불명
93	5	20(현금 20)	농작업대행 · 공동작업설치운영 ; 작업대행, 기계공동이용(법인소유)
94	5	40(현금 40)	농작업대행 · 공동작업설치운영 ; 작업대행, 기계공동이용(법인소유)
95	420	60(현금 60)	공동출하 ; 벼 개별경영, 지역명품쌀 품질인증 공동판매
96	10	13(현금 13)	부분협업경영 ^{A)} · 공동출하 ; 우리밀 협업경영 8,000평, 쌀(유기농법) 2,000평, 채소 · 감자(유기농법) 협업경영, 나머지 벼농사 개별경영

표 6.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운영실태 총괄

전면협업경영	4	A. 자작지 및 임차지 3
		B. 임차지 1
부분협업경영	17	A. 자작지 및 임차지 12
		B. 임차지 5
집단재배·공동작업		5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27
농기계·시설대여		1
농작업 대행		30
공동출하·가공		17
벼농사와 무관한 사업		9
법인운영 중단		7
법인해산		1
기타(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4
조사불능		15

재배를 협업으로 경영한다. 이들은 벼농사 협업경영과는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잉여노동력의 일부를 처리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터이지만 앞으로 벼농사 협업경영에로의 진전에 기대를 걸어봄직도 하다.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이 법 제6조의 정신에 따라 협업적 경영을 이룩한 법인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면협업경영 4개소와 임차지 부분협업경영 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법 제6조와 정관 제4조에 밝혀진 부대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림어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된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 즉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
 2.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
 5. 생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이 그것이다.
- 위 조항의 입법정신은 어디까지나 농림어업의 협업적 경영을 주사업으로 하고 예시된 5가지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사업은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빈약하고 부대사업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인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농업구조개선의 핵심과제로 되어있는 벼농사의 구조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정책당국이나 현장농어민, 그들의 조직인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은 말로는 국제경쟁력 확보라고 소리높여 와치고 있지만 실지로는 이를 외면한채 WTO농업협정에 의해 2004년이면 닥쳐 올지도 모를 쌀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그 동안에도 늘어만 가야하는 최소시장 접근(MMA)에 의한 쌀 의무수입량의 증가추세앞에 무방비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V.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육성대책

이상에서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실태를 보아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인 농림부에서 발표한 『법인경영체에 대한 정책방향』(1996. 12)에서는 앞으로 벼농사는 농업회사법인이 담당하도록 있다고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정책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²⁾

한국농업구조개선의 핵심과제를 짚어진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작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정책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 모두, 그리고 이 땅의 농업인 모두가 칠전팔기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교육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로서 『영농법인교실』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간행하는 월간 『새농사』(1996.5-1997.4)에 연재하여 왔다.

이 『교실』에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운영해 가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도 이 교육과정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법인 구성원은 운동차원에서 합습회를 열어 주변 농업인을 결집시켜 가야 할 것이다.

법인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은 『영농법인교실』에 수록

2) 동자료 P.9에 법인경영체 발전방향을 밝히면서 연중 노동수요가 있는 축산·시설농업분야 등은 조합형태로, 노동수요가 편중된 수도작 등은 회사형태가 적합하다고 밝혀 영농조합법인에 의한 벼농사 구조개선은 단념했거나, 포기하였다.

하였지만 특별히 유념해 두어야 할 몇가지 점을 여기에 적시 한다.

1) 지역(마을)농업 구조개선의 핵심적 역할 수행토록

① 법인의 문호개방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면 조직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을 고려에 넣는다면 5인만의 농업을 구조개선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 때에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은 그 마을의, 그 지역의 농업전반의 구조개선작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마을의 농업인을 외면하고서 구성원 5인의 농업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농촌의 인간관계이고 물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법인구성원은 마을의 농업인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설득을 거듭하며 명실공히 구조개선 사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②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조사와 자원활용계획 및 부대사업 계획작성

마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해·납득 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갖추어져야 하고 법인 스스로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못 갖는 설명은 남을 감화시킬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활용계획을 세워 법인에 의해서 벼농사의 기계화·대경영을 추진해 갈 때 남아도는 노동력을 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축산, 원예, 농산가공 등의 부대사업을 설정하는 등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경영체제의 영농설계를 그려내야 한다.

③ 주민설득과 조직, 책임자 선정

이 설계를 주민회의에 부쳐 이에 대한 합의를 받아 분야별 작업반을 편성하고 구성원의 특기에 따라 작업반의 책임자를 선정하되 일차적으로는 작업반 편성에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작업반 소속원은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아가며 교대하되 작업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하도록 한다.

이상은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이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농업 구조개선의 핵심적 역할을 할 때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몇가지 점을 적시한 것이나 이는 벼농사 이외 작목의 영농조합법인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다.

벼농사 이외 작목의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도 대부분 개별적

으로 벼농사는 영위하고 있다. 이를 법인은 벼농사 이외 작목에 모든 힘을 집중하다 보니 벼농사는 소홀해질 것이고 따라서 벼농사 구조개선은 엄두도 못낼 것이다. 이같은 법인들이 구성원들의 벼농사를 묶어 벼농사 협업경영을 추진해 간다면 벼농사에 빼았겼던 노력을 각자의 주력작목에 집중시킬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고 보면 현재 2,300여개의 벼농사 이외 작목의 영농조합법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벼농사 구조개선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는 판단도 선다.

④ 사업진행 : 법인이 벼농사 협업경영이외의 부대사업을 설정했으면 분야별 전문분임조가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할 경우 가능한 것 부터 선행시키면서 타분야를 뒤 따라오게 한다. 필요하면 외부의 전문기술, 전문경영자를 채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예시하면, 법인의 주요사업을 맡은 벼의 분임조의 경우, 먼저 품종통일로 동일한 비배관리, 전조·저장시설 등의 이용도의 제고, 미곡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공동경영, 공동판매, 벼농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기계운전자의 조직과 작업배치 및 농한기의 노동력 활용계획 등을 관장하는 벼농사 분임조를 선행시키면서 남아도는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순차적으로 설정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벼농사 이외 작목의 협업화가 선행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해당작목의 협업경영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구성원 가운데서 벼농사 분임조를 결성하여 벼농사의 협업화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이미 조직되어 있는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비농업인의 투자유치

법인운영에는 자체자금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법인의 자체자금은 구성원의 출자금이 주된 원천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려울 때는 준조합원 자격의 외부인사로 부터의 출자를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밝히고 현금 출자 또는 농지출자에 대한 배당을 활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자금의 농촌유입은 같은 통로를 통할 때만이 그 실효를 견을 수 있을진데 도농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법인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이 농업외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이종(異種)업종간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판로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출자에 대한 배당을 확실히 해두지 않은 채 비농업인의 출자를 바란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즉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은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원칙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이 농발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그대로 법인정관의 목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즉 “농업의 협업적 경영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 생산된(필자)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협업경영의 개념이 모호한채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협업경영의 개념정립부터 해 놓을까 한다.

① 협업경영의 개념

협업경영은 2개이상의 개별적인 경영(기술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의 통합체)을 통합하여 하나의 경영체로 만들어 단일 경영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경영구성요소를 조직하고 구성원의 공동의 힘에 의해 물적 생산활동, 유통·재무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고립, 분산 소경영의 장벽을 뛰어넘어 농업경영의 목적인 순수익의 극대화, 또는 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새로운 경영형태이다.

이같은 협업경영의 유형에는 그 정도에 따라 부분협업경영과 전면협업경영이 있다.

부분협업경영은 개별경영을 기본으로 하고서 축산·경종·농산가공 가운데 일정부분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부분협업경영은 협업경영에 참여한 경영부분의 비중이 개별경영으로 남겨진 부분보다 비중이 낮고 개별경영부분과 협업경영부분사이에 연관이 단절되어 있는 형태의 협업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협업경영은 개개농가가 경영의 중심을 협업경영체에 두고 개별경영부분을 남기지 않거나 남기더라도 협업경영부분보다는 그 비중이 낮은 형태의 협업경영을 말한다.

말하자면 개별경영이 협업경영체라는 단일 경영주체아래 개별경영이 흡수 통합되어 개개의 경영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한마을에 벼농사를 하는 사람, 축산을 하는 사람, 채소농사를 하는 사람이 각각 경영요소의 전부(자재, 자금, 노동, 토지 등)를 협업경영에 투입하여 모든 경영요소가 협업경영체라는 단일 경영주체의 의지에 의하여 질서지워져

서 벼농사와 채소농사와 축산이 서로 긴밀한 통일적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되고 조직되어 집중관리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남겨진 개별경영은 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업경영에 종속되며 부차적이고 보조적일 따름이다.

부분협업경영은 개별경영과 협업경영과의 사이에 자재·자금·노력·판로 등에 경합이 일어나고 이 경합 때문에 협업경영부분이 파괴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협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생각하는 법인은 전면협업으로의 발전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 동안의 시간을 구성원 훈련과정으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② 법인정관의 중요성

법인의 운영원칙은 정관에서 밝혀져서, 정해진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구체적 항목과 그에 대한 설명은 별책『영농법인교실』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여기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서 그친다.

즉 법인정관은 한 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그러니 이것을 남에게 맡겨서 작성한다거나 남의 것을 모방하여 작성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뿐만아니라 몇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 구성원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사람이 상의해서 만들었더라도 이는 구성원 전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법인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새로이 맞아 들이는 구성원에게도 해당된다.

법인체의 감사는 법인운영이 정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예의 검토하고 평상시에도 정관에 위배되는 운영이 눈에 뜨일 때는 지체없이 이를 바로 잡아가야 한다.

정관이 법인체 운영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정관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부에서 예시한 모범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등록만 하고서 그 다음에 정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거나 자신들에 알맞게 작성한 예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하기야 협업경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협업경영 정관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영농법인교실』에서는 정부가 예시하고 대부분 법인이 거기에 따르고 있는 현재의 법인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의 대안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 자세한 것은 필자가 저술한『한국농업경제론』·『한국농업의 발전이론』, 1992. 제8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V. 결 론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는 WTO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농업생산의 전반적인 정체와 소농경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져 마침내 국민의 주식물인 쌀의 자급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때 쌀의 자급을 외치고 쌀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한·두해 쌀의 자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쌀 이외의 부문에서 먼저 무너져 갈 때 쌀만을 지키기 위해 농사에 매달여 농촌을 지킬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이 벼농사를 기초로 해서 여타부문이 종합적으로 연관지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농업의 구조개선 사업의 주축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한다고 하여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그랬지만 그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겸우지 못하고, 특히 벼농사의 경우 그 실패가 눈에 띄이게 나타나자 금년에 들어 궁여지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업농 육성쪽으로 중심을 옮겼다.

벼농사 영농조합법인의 부진의 이유와 그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이를 살펴보려는 생각도 해 보지 않고 내다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명이라도 붙어 살아나 보려고 애쓰는 영농법인들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에 이 전업농 육성정책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구조개선의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현재의 구성원을 핵으로 하여 법인의 문호를 개방해서 마을 주민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길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핵심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주민참여를 계도 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것과는 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업농 육성시책으로 영농법인의 핵심이 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영농법인의 조직 확대를 방해하고 법인의 경작면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사업에 경합까지 불러 일으켜 영농법인의 경영안정에 결정티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영농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계장비만 하더라도 과잉투자라고 평가되고 있는 터에 개별전업농에 대한 기계 지원은 중복투자가 되어 국가 재정의 낭비는 물론, 영농조합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의 유휴화가 촉진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존립마저 위협하여 이들을 운영중단·법인해체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협

업농 육성시책을 재검토하고, 영농조합법인 시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그 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 구조개선의 올바른 길을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헤메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길이 빠르고 파국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업농 육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는 일정한 전제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들어설 가망이 전연없고 마을에 젊은 인력이 없다든지 마을주민이 모두 노령화 또는 겸업으로 벼농사에 관심을 둔 농가가 없어져서 그들의 논·밭을 맡아 줄 농가가 마을에 남아있는 극소수의 전업농 밖에 없다고 할 때 이는 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업농 육성시책은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합당한 것이니 그런 지역을 골라 선별적으로 시도할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때 금후의 한국농업의 근본적 과제는 6만여호의 전업농, 기업적 영농을 지향하는 농업회사법인, 마을의 일부농민 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이들 몇몇의 엘리트 층에 의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먹거리 공급원으로서의 농업본래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 구조개선 작업의 핵심이 되어 마을의 소농경영의 자립적 기초를 재구축 해가야 한다.

이때에 필요한 시책은 최소한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경작조건을 정비하여 복합경영이 가능토록하는 생산기반 정비 확대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체계의 설정(작목간의 수익의 규형화, 복합적으로 사계절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농산물 가격정책)이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일정한 국경조정정책과 직접지불제도의 즉각적 실현이 필요하다.

농업을 둘러싼 외적 조건의 개선은 소수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상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적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공급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책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같은 새로운 농정은 당장은 소농민 경영의 회복과 본격적 전개(개별경영에 의한 개체의 확립)를 목표로 하면서도 현재의 영세한 필지의 개별적 이용을 시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경영의 기초로 되는 소소유(小所有) 즉 「자가노동에

기초를 두는 개인적 사적소유'를 전제로 해서 그 「정상적인 사회적 이용」(소유단위에 얹매이지 않는 이용단위의 설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단적 토지이용, 혹은 마을 전체의 토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의 마을단위 영농체제를 개별경영과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면서 영세경작의 틀을 벗어나도록 발전 시켜 가야 할 것이고 이 임무를 떤 것이 영농조합법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에서 농용지를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영세농경제(零細農耕制)에서 농포제(農圃制) 농업에로의 전환인 것이다. 여기서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우선이라고 하는 목표의 실현여부는 토지 이용과 토지소유의 모순의 경중에 달려 있을 것이므로, 구조개선의 핵심체인 영농조합법인은 이 문제에 대한 확인과 극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장영철, 『경지의 공동화와 기계화 집약농업』, 1976
2. 과학기술처(연구기관; 건국대학교 농업문제종합연구소), 『수출증대 농공병진을 위한 농업재편성 계획』, 1969
3. 김병태, 『한국농업경제론-한국농업의 발전이론』, 1992
4. Y.K.Yang, 『Farmers Organizations in Taiwan』, 1978
5. John Wong, 『Group Farming in Asia Experiences and Potentials』, 1979
6. 小倉武一 編著 『集團營農の展開』, 1976
7. 伊藤忠雄・八卷 正 編著, 『農經營の法人化と經營戰略』, 1993
8. 日本農業會議所, 『農業法人の經營診斷』, 1995
9. 日本農業會議所, 『農業法人經營實務』, 1994
10. 日本農業會議所, 『農業政策の展開と農業法人の課題』, 1994
11. 日本農業會議所, 『農業法人への挑戦』, 1994
12. 工藤昭彦, 『ムラ農企業方式による稻作農業再編の實態と論理』, 1988
13. 上原信博, 『現代日本經濟における農業問題』, 1996

참고자료

2. 농림부,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 1996. 7. 8
3. 농림부, 『법인경영체에 대한 정책방향』, 1996. 12
4.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6. 6. 27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
6. 농업협동조합법
7.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8. 한국농어민신문, 대산농촌문화재단후원 영농조합법인 특별취재, 1995. 9. 11 (1997. 6. 30)

1. 농림부,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1996. 5